1. 주요 개정 내용

① 현재는 외투지역 입주기업이 **연접한 부지의 신규임대 요청** 시 **신규 계약으로만** 입주 가능하나, **旣체결한 입주계약의 변경**으로도 가능하도록 **절차 간소화**(案 제13조)

② 현재 외투기업이 **입주자격을 미충족**하더라도 **가동중인 경우 입주를 허용**하고 있으나, 허용기간 만료시점이 **없어 이를 입주계약 기간**까지로 명시(案 제21조제2항)

③ 현재 **협력업체 입주대상**은 **공정단축, 원가절감** 등으로 **한정**되어 있으나, **연구개발을 추가**(案 제22조제1항)

④ 현재 입주기업이 **미임대 부지를 추가 사용**할 경우 사용부지에 대한 **임대보증금 납부 규정이 없으므로 납부조항 신설**(案 제22조의5)

2.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13조(입주계약)	**제13조(입주계약)**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
② <신 설>	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 설치의 목적으로 연접한 부지의 사용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, 연접한 입주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입주계약 변경에 따라 2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	기존 입주기업이 연접한 부지의 추가사용 요청시 입주계약 변경으로 할 수 있게 함
② <생 략>	③ (현행 2항→3항으로 이동)	
③ <생 략>	④ (현행 3항→4항으로 이동)	
④ <생 략>	⑤ (현행 4항→5항으로 이동)	
제21조(입주자격의 유지)	**제21조(입주자격의 유지)**	
① <생 략>	① <생 략>	
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주를 계속해서 허용하되,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입주를 허용하되,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기존 입주기업이 사정 변경으로 입주 자격 상실할 경우 입주 허용기간을 계약기간까지로 구체화
제22조(협력업체 입주제도)	**제22조(협력업체 입주제도)**	
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(외국인투자지분 30%이상 기업)이 공	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(외국인투자지분 30%이상 기업)이 공	협력 업체 입주 허용업종에 연구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정단축,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정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.	정단축, 원가절감,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정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.	개발업 추가
제22조5(미임대부지 등의 추가사용) ① ~③ <생 략> ④ <신 설>	**제22조5(미임대부지 등의 추가사용)** ① ~③ <생 략> ④ 임대보증금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	기존 입주기업이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과
부칙 **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**		